



리닝 상업비밀침해죄 사건

2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7)二中刑终字第432号
판결 일자	2007년 12월 17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상업비밀 침해죄 성립)
공소기관	북경시 조양구 인민검찰원		
피고인	리닝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19조, 형사소송법 제189조		
영업비밀	고객정보		
키워드 (Keyword)	고객정보(客户信息), 중대한 경제적 손실(重大经济损失), 부정당한 수단 에 의한 상업비밀취득(不正当手段获取商业秘密)		

02 사건 개요

피고인 리닝은 피해자 북경 아오얼 환경 예술 유한공사의 경리로, 2002년 5월 아오얼 공사 명의로 호남성 씨양탄시 도시 가로등 개조에 대해 여러 차례 공사를 대신해서 협상을 하였으나, 결과가 없었다. 피고인 리닝은 2002년 9월 사건의 상스량과 동업하여 북경티엔 청명리 환경 예술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티엔청 명리 공사의 명의로 호남성 씨양탄시 샤오 산로 건설 지휘부와 전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10월에는 씨양탄시 관리처와 전구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오얼 공사에 조성된 손실은 인민폐 100여만 위엔이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리닝의 행위에 대해 상업비밀침해죄로 기소하였고, 원심 법원은 1년 8개월의 유기징역형에 인민폐 20만 위엔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공소기관	⇒	⇐	피고인
전구구매 정보는 아오얼 공사 업무를 통해 획득한 것이고, 공중에 알려진 정보라 할 수 없다.			호남성 씨양탄시의 전구 구매정보는 아오얼 공사 소유의 정보가 아니라 시장정보일 뿐이므로 상업비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다.
아오얼 공사와도 협약을 체결하였고, 월급과 복리 대우도 아오얼 공사로부터 받았다.			아오얼 공사와 직접 비밀보호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04 판결 요지

상소인 리닝이 사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오얼 공사 업무부 경리의 임무를 맡으면서, 공사를 대표하여 호남성 씨양탄시 관련 단위와 가로등 기구 판매 업무에 관해 협상을 하면서, 공사 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파악하고 있던 아오얼 공사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타인과 동업으로 설립한 공사가 정보를 사용하고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상업비밀 권리자인 아오얼 공사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그 행위는 국가의 상업비밀 권리자에 대한 무형자산 전유권과 사회주의 시장의 관리 질서를 해한 것이므로, 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한다.

05 Key Point

중국의 상업비밀침해죄 관련 형사판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한국 상업비밀보호 법제도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 처벌규정이 들어있는데,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에는 형사처벌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형법 제219조에서 '상업비밀침해죄'를 규정하고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 및 경영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거래처와 계약함으로써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의성이 인정되어 상업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은 사안이다.